

사단  
법인  
대한 속 기업회

총회]총회 회의록

1968, 6, 4.

( 학교 )

( 가칭 )

사단

법인

대한 속기 협회

총회총회 회의록

1. 개최 통지 일자 1968년 5월 29일

2. 개최 일자 1968년 6월 4일

3. 개최 장소 국회 속기사 양성소

4. 출석회원수 재적 151인

출석 124인

5. 사회자 성명 준비위원장 안인영

임시의장 김진기

6. 진행 유지영

7. 개회선언 ( 오후 2시 개회 )

유지영 준비위원장으로부터 개회선언을 하다

8. 경과보고

안인영 준비위원장으로부터 1968년 5월 20일에 개최되었던 제 3회  
대한 속기협회 임시 총회에서 본협회를 사단법인 협회로 발족 시킬것  
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이의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협회의 사단법인 발족에 관한 제반사항을 동준비위원회로 하여금 담당  
케 하자는 다수 회원의 계의가 있어 준비위원장에 안인영. 준비위원에 김  
영선. 유지영. 한봉영. 이옹수. 전해성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1968년 5월 22일 제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창립취지문과 정관기초에 착수, 장시간 논의한 결과 원칙의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문안작성에 있어서는 설립취지문에 이 용수, 한봉영, 준비위원에게 정관에 있어서는 유지영, 김영선 준비위원에게 각각 위임하고 1968년 5월 28일 제 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임하여 작성된 2건의 초안을 놓고 재검토하여 체결하였고 창립총회는 1968년 6월 4일 국회 속기사 양성소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여 금번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는 오지의 경과 보고를 하다.

#### 9. 성원보고

유지영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재적회원 151명 중 1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하다.

#### 10. 임시 의장 선거

안인영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임시의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물자 송기철 회원으로부터 구두로천으로 선출하자는 동의와 아울러 김진기 회원을 임시의장에 선임할 것을 제의하자 다수회원 이의 없다. 하므로 김진기 회원을 임시의장에 선출하다.

#### 11. 내빈 축사

배영호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권호섭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축사를 하다.

#### 12. 창립 취지문 채택

이 용수,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창립 취지문 낭독이 있은 다음 이 기동 회원

으로부터 자주수정은 새로 선임되는 이사회에 익숙화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 13. 정관(안) 심의

임시의장으로부터 정관심의 방법을 둘자 축조심의 키로 하자는 다수회원의 제의가 있어 유지영, 준비위원이 과조문을 낭독한 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무수정통과 하다.

#### 14.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승인서

유지영 준비위원으로부터 본협회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다수회원이 이의 없다 하므로 각각 원안대로 통과함.

#### 15. 임원선출

임시의장으로부터 임원선출 방법을 둘자 경원도 회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고 5인의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자는 동의를 한바 이의 없이 채택하고 안인영, 유지영, 이강현, 한봉영, 양원영을 전형위원으로 선출하고 정회를 선포하다.  
(오후 4 시 30 분 회의중지)

(오후 5 시 10 분 계속개회)

임시의장으로부터 속개를 선언하고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 명단을 발표하고 이의 우무를 문의한바 다수회원 이의 없다 하므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원만	국회의원
부회장	장기태	
"	이동근	
이사장	안인영	
이사	유지영	
"	이용수	
"	전해성	
"	이강현	
"	한봉영	
"	김영선	
"	한종열	
"	송박문	
"	한동춘	
"	양원용	
"	최용식	
감사	김인녕	
"	고재흠	

#### 16. 기타 사항

신세화, 권창무 회원등이 협회 발전에 관한 토론이 있은 후

#### 17. 폐회

김수민 회원으로 부터 폐회 동의가 있자 다수 회원이 찬성하므로  
임시의장 폐회를 선언하다. (오후 5시 50분 산회)

~~기념 날인~~

안 인 영

유 지 영

이 용 수

전 해 성

한 종 얼

기 인 영

고 재 흠

양 원 용

## (假稱)社團大韓速記協會

## 創立總公會設立錄

1. 用催通知日字 1968年 5月 29日
2. 用催 日字 1968年 6月 4日
3. 用催 場所 口公連記士養成所
4. 出席公員數 在籍 151人  
出席 124人
5. 司公者姓名 準備委員長 安仁榮  
臨時議長 金鎮基
6. 遷行 柳智永
7. 用公宣言 (午後 2時 用公)  
柳智永 準備委員長으로 부터 用公  
宣言을 하다.
8. 經過報告  
安仁榮 準備委員長으로 부터  
1968年 5月 20日에 用催 되었던  
제3回 大韓速記協會 兩時總公

에서 本協会<sup>는</sup> 社團法人 協會로  
発足 시킬 것을 滿場一致로 設定  
하였고 이의 準備<sup>를</sup> 위해 準備  
委員會<sup>를</sup> 構成하여 本協会의  
社團法人 發足에 關한 諸般事項을  
同 準備委員會<sup>로</sup> 하여금担当케  
하였다 多數會員의 提議가 있어  
準備委員長에 安仁榮 準備委員  
에 金永善, 柳智永, 韓奉永,  
李龍洙, 全海成으로 하는 準備  
委員會<sup>를</sup> 構成하였으며

1968年 5月 22日 第1次  
準備委員會<sup>를</sup> 召開하고 創立  
趣旨文과 定款起草에着手.  
當時由 論議的 結果 委員會의  
大綱을 完成하고 実體의 인  
文寫作成에着手로서 設立趣旨  
文에 李龍洙, 韓奉永 準備委

들에게 定款에 있어서는 柳智武

金永善 准備委員에게 각각 委任하고

1968年 5月 28日 第2次

准備委員會을 由催하여 委任하고

이 作成된 2付의 草案을 놓고

再檢討하여 批准하였고

創立總會는 1968年 6月 4日

12回連記土養成所에서 由催하기

로決定하여 今後 創立總會를

由催하기에 이르렀다는 意旨의

經過報文을 하다.

#### 9. 成員報告

柳智武 準備委員으로 부터

在籍會員 151名中 124名이

出席하여 成員이 되었음을 報告

하다.

#### 10. 騰時議長選舉

安仁宗 準備委員長으로 부터

臨時訳長 選出方法에 대하여 見  
은 물자 采基特公員으로 부터  
口頭呼聲으로 選出하자는 動議와  
아울러 金鎭基公員을 臨時訳長에  
選任할것을 提訳하자 多數公員  
異議 없다 하므로 金鎭基公員을  
臨時訳長에 選出하다.

#### 11. 謝辭

表誌錦 口公事務總長을 代理하여  
权孝燮 口公事務處 訳事局長이  
祝辭를 하다.

#### 12. 創立趣旨文 採擇

李龍洙 准備委員으로 부터  
創立趣旨文朗讀이 있은 다음  
李起同 公員으로 부터 宜의修正은  
서로 選任되는 球事公에 一任하  
기로 하고 原意대로 通恩시키자  
는 動議가 있어 이를 清場一致

## 로通過하다.

### 13. 起款(案)審訟

臨時訟長으로 부터 起款審訟方法을

문자 逐條審訟하기로 하자 는 多數會員

의 提訟가 있어 柳智水 準備委員

이 各條文을 読讀後 审訟의

部分은 修正通過하고 审訟의

部分은 原案대로 通過하다.

修正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① 同條 第1項 「統計資料蒐集과」

를 第4項 「宣伝·出版에 관한

事項」 앞에 插入하기로 한.

② 同條 第5項은 新設하여

「其他 未記外 合聯 되는 諸般事

項」을 新設하기로 한.

나. 第3條 「名稱」에 대하여 尹炳直

회원으로 부터 「社團法人 大韓連

言記協会」를 「社團法人 大韓連

記士協公로 「士」字를 挿入하자고  
修正 提議가 많았고  
康德薰公員으로 부터는 「士」字를  
挿入하지 않으려고 「人」字를 挿入하여  
「社團法人 大韓速記人協会」로 修  
正하자고 建議이 있다 하여 이名稱  
에 대해 多數公員의 贊反討論이  
있은 다음 이 문제는 더 慎重히  
審議하기 위해 잠시 保留하고  
余他條文 審議完了後에 重審議하  
자로 臨時議長의 提議로 保留하다  
다. 第4條

正後 理事會에서 本協会 支部를  
設置할 수 있는 规定을研究하도록  
하고 通過沾.

라. 第11條

第2項 任員의 任期中 ----- 事後承  
認을 엄어야 한다」를 刪除 기로 함

叶. 第 12 條

第 1 項中 「理事 監事」 을 刪除하고

第 2 項中 「解任」 은 「罷任」 으로 订正

마 함께 「理監是」 다음에 「理事中」 을 握入하기로 하

사마 第 1 千條 中 「다」 는 「第 2 款」 의 宣告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를

修正함.

아마. 第 20 條

第 6 款 中 「推出」 은 「推舉」 으로 修

正함.

자마. 第 21 條中 「陳述」 은 「申陳」 으로

修正함.

자. 保留外 명단 第 3 條 名稱에 實

하여 画上 程式하고 賛. 反對論이

多數 全員으로 부터 있은 後 表決

에 附註바 例第 120 款中 45 名

만이 修正提議에 賛成으로 證實하고

第 3 條 名稱은 契約대로 可決하다.

#### 14. 事業計劃書 및 預算審承認

柳智水 准備委員으로 부터 本協会  
의 事業計劃書 및 預算書에 대한  
説明이 있은後 多數公員이異議  
없다 补으로 각각 席位대로通過  
함.

#### 15. 任員選出

臨時議長으로부터 任員選出方法을  
물자 韓原道委員으로 부터 잠시  
停會하고 5人の 銀衡委員을 选出  
하여 銀衡委員会에서 选出도록  
하자 이 動議를 起 바異議 없이  
採択하고 安仁榮, 柳智水, 李原  
員, 韓奉永, 梁源龍을 銀衡委  
員으로 选出하고 停會를 宣布하다

(午前 4時 30分 / 会议中止)

(午前 5時 10分 繼續開會)

臨時議長으로부터 続開會를宣言하다

銓衡委員會에서 选出한 名單을 發表

补正異議有于를由於故而由多數

會員異議 없어 补으로 滿場一致

로 选出되었음을 宣言하라

选出된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長 李渾萬 口會議員

副會長 張基泰

李東根

理事長 安仁榮

理 事 長 柳智永

〃 宣傳部長 李龍洙

〃 事務部長 全海成

〃 研究委員長 李康實

〃 資格審查委員長 韓奉永

理 事 金永善

〃 韓鍾烈

〃 宋博文

〃 韓東春

理事 崔龍植

" 梁淳龍

監事 金仁寧

" 高在欽

### 16. 其他事項

申世萃, 林昌茂, 金慶善, 金協會  
等處에 由地 討論이 있은 後

### 17. 申公

金秀旼, 申慶善, 申永河, 申公勸說

가 以자 多義文, 申慶善이 賛成外另  
로 重申時 文長 申公玄 宣言하다.

(午後 5時 50分 教文会)